



전자신원확인 규정을 개정하는 정부령 제**320/2026/ND-CP**호 외국인과 기업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

2026 년 9월 28일 시행

전자신원확인 및전자인증에 관한정부령제 69/2024/ND-CP 호를 개정'보완

1. 외국인에 대한 전자신원확인 계정 발급 요건

종전

거주증 보유 필수

및연령에 따라 ¹등급 ²등급 구분



2026 년 9월 28일부터

적법한 입국·거주만으로 충분

신청 시 등급 구분 없이 계정 발급

제7조 — 종전 규정(제69/2024호) 대비 신규정(제320/2026호)

제7조. 전자신원확인 계정의 분류 및 발급 대상

~~베트남의 기관·조직·시민 및 베트남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 조직·개인은 다음과 같이 전자신원확인 계정을 발급받는다.~~

...

2. ~~베트남에서 영주증 또는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은 만 6세 이상의 외국인~~은 ~~베트남에 적법하게 입국하거나 베트남에 적법하게 거주하는 외국인~~은 신청 시 ~~1등급 전자신원확인 계정 또는 2등급 전자신원확인 계정을 등급 구분 없이 전자신원확인 계정을 발급받는다.~~ ~~베트남에서 영주증 또는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은 만 6세 미만의 외국인~~은 ~~신청 시 1등급 전자신원확인 계정을 발급받는다.~~

2. 외국인에 대한 전자신원확인 계정 발급 절차

종전

두 개의 병행 절차

¹ 등급: 앱을 통한 본인등록 · 기관 방문 불필요 / ² 등급: 출입국관리기관 방문



2026 년 9월 28일부터

단일 절차로 통합

반드시 (성급공안출입국관리기관을 방문하여 여권을 제시)

제 11 조 — 종전 규정(제 69/2024 호) 대비 신규정(제 320/2026 호)

제 11 조 · 외국인에 대한 전자신원확인 계정 발급의 순서 및 절차

1. 1 등급 전자신원확인 계정의 발급: a) 외국인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국가신원확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설치한다; b) [...] 디지털 기기로 얼굴 사진을 수집하고 국가신원확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자신원확인 계정 발급 요청을 제출한다; c), d) [...]

2. 2 등급 전자신원확인 계정의 발급

a) 1. 외국인은 공안부 또는 성급 공안의 출입국관리기관에 출석하여 여권 또는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를 제시하고 전자신원확인 계정 발급 절차를 이행한다(2등급).

...

3. 외국인에 대한 전자신원확인 계정 발급 처리기한

종전

1 — 3 — 7 근무일

¹ 등급 : 최대 7일 / 2 등급 사진 지문 보유 시: 최대 3일 / 미보유 시:

최대 7일



2026년 9월 28일부터

2 — 5 근무일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사진 지문이 있는 경우: 최대 2일 / 없는 경우: 최대 5일

제 13조 제3항 — 종전 규정(제 69/2024호) 대비 신규정(제 320/2026호)

제 13조 전자신원확인 계정 발급의 처리기한

본 정부령이 정하는 적법하고 완비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전자신원확인 및 전자인증 관리기관은 다음의 기한 내에 전자신원확인 계정 발급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

3. 외국인의 경우:

a) ~~1 등급 전자신원확인 계정 발급의 경우 1 근무일 이내;~~

b) a) 국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얼굴 사진 및 지문 정보가 이미 있는 ~~03 02~~ 근무일 이내 ~~2 등급~~ 전자신원확인 계정 발급의 경우; 국

~~가~~ b) 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얼굴 사진 및 지문 정보가 아직 없는 ~~07 05~~ 근무일 이내 ~~2 등급~~ 전자신원확인 계정 발급의 경우.

4. 외국인의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종전

사전 등록 필수

영주증임시거주증을 보유한 외국인만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카드 제시,

얼굴사진및지문제공 필요



2026 년 9월 28일부터

전자신원확인 계정만 있으면 가능

또는국가출입국데이터베이스에정보가이미완비된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폐지

정부령 제 **77/2020** 호 제 **10** 조 — 종전 규정 대비 신규정(제 **320/2026** 호)

제**10**조 .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한출국 및 입국

1.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하여 출국입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d) 베트남 권한기관이 발급한 영주증 또는 임시거주증을 보유한 외국인. -

2. 본조 제 1 항에 규정된 자는 출입국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직접 등록 절차를 이행한다 [...]: a) 신청서에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 d) 외국인의 경우 영주증 또는 임시거주증 제시; d) 얼굴 사진 제공; e) 자문 제공 [...]

3.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한 출국·입국이 허용되는 대상: [...] b) 본조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경우 [...]

1.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한 출국·입국 대상: a) 베트남 시민; b) 외국인.

2.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한 출국·입국 조건: a) 국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완전히 수집·갱신된 베트남 시민 또는 2등급 전자신원확인 계정을 발급받은 베트남 시민; b) 국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완전히 수집·갱신된 외국인 또는 전자신원확인 계정을 발급받은 외국인.

3. 공안부는 국방부, 외교부와 협의·조정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한 출국·입국이 가능한 대상의 범위를 안내한다 [...]

제11조: 출입국통제기관의 책임 — 전부 폐지.

5. VNeID 에 통합된 서류: 원본 요구 금지

종전

보안 의무만 규정

종전제 4 조제 4 항은계정정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만을 요구



2026 년 9월 28일부터

원본·사본 요구 금지

VNeID 에통합된서류에대하여 적용되며 , VNeID 를 통한 행정절차·온라인 공공서비스는수수료면제감면 대상

제4조 제4항 — 종전 규정(제 69/2024 호) 대비 신규정(제 320/2026 호)

제4조 · 전자신원확인 및전자인증의 원칙

...

4. 기관조직개인은 전자신원정보를 활용·사용할 수 있다. 행정절차, 공공서비스, 민사거래 및 기타 활동을 접수·처리할 때 전자신원정보와 국가신원확인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된 정보·서류를 활용·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신원확인 애플리케이션에 이미 통합된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개인·조직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전자신원정보의 활용·사용은 전자신원확인 계정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사생활의 안전과 비밀, 개인의 비밀 및 가족의 비밀 보장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가신원확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행정절차 및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이행하는 기관·조직·개인은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 수수료의 면제·감면은 수수료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행된다.

6. 기업의 전자거래계정 연동 의무

종전

관련 규정 없음

정부령 제69/2024/ND-CP 호(원본)는 전자거래계정 연동 의무를 두지 않았음



2026 년 9월 28일부터

연동 및 인증 의무화

디지털플랫폼대상 : 전자상거래, 은행, 통신, 전자세금계산서, 운송, 관광, 의약 진료 소셜네트워크등

정부령 제69/2024호 제40조 제9항·제10항 — 정부령 제320/2026호로 신설
제40조. 시행 효력

...

9. 베트남 내 교육, 디지털 문해 보급, 증권, 통신, 은행,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판매자, 라이브방송 판매자 및 제휴 마케팅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사업, 관광사업, 의약사업, 진료 및 소셜네트워크 분야의 활동에 제공되는 디지털 플랫폼상의 전자거래법에 따른 전자거래계정은 전자신원확인 계정과 연동·인증되어야 한다. 국방·안보 및 국경 간 서비스 활동에 제공되는 디지털 플랫폼상의 전자거래계정은 해당 디지털 플랫폼이 조건을 충족하고 전자신원확인 및 전자인증 플랫폼에 연결된 때부터 사용 전에 전자신원확인 계정과 연동·인증되어야 한다.

10. 본조 제9항에 규정된 분야 외의 분야에 대하여는, 장관 및 부(部)급 기관의 장이 사용 전에 전자신원확인 계정과 연동·인증되어야 하는 해당 분야 온라인 거래의 구체적 목록을 발령한다.

7. 신원확인 시스템 연결 시의 조건 및 의무

종전

최대 **30** 일의 심사

활용이력보관의무없음

· 데이터 재공유 금지 규정 없음



2026 년 9월 28일부터

5 근무일 이내 연결

vNeID 예표시하기위한활용이력 보관·제공 의무 및 데이터 재공유 금지 추가

제 **18** 조 — 종전 규정(제 **69/2024** 호) 대비 신규정(제 **320/2026** 호)

제**18**조 · 전자신원확인 및전자인증 시스템과의연결 조건 및 순서

1. 국가기관 ' 정치조직 ' 정치사회조직 ' 공공서비스 제공조직 , 국가관리 업무 수행, 지원금·연금·사회보장 급여 및 기타 적법한 경비의 지급 업무를 위임받은 조직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전자신원확인및 전자인증 시스템에 연결할수 있으며 , 이 경우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이 정보시스템 안전보장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해당 시스템이 정보시스템 사이버보안 보장 방안을 충족하여야 한다 —

최소 3등급 이상

3. 30 일 이내에 [...] 전자신원확인 및 전자인증 관리기관은 심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4. 점검이 완료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전자신원확인 및 전자인증 시스템의 관리·운영 기관은 연결을 시행한다 [...]

6. 전자신원확인 및 전자인증 시스템의 정보·서류에 연결하여 이를 활용·사용하는 기관·조직은 전자신원 주체가 알 수 있도록 국가신원확인 애플리케이션에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서류의 활용·사용 이력을 보관하고 전자신원확인 및 전자인증 시스템의 관리·운영 기관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7. 전자신원확인 및 전자인증 시스템으로부터 인증·활용·사용된 정보 및 서류는 다른 기관·조직·개인에게 공유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정보주체가 공유를 요청하거나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행 로드맵 —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기한

정부령 시행
28/9/2026

플랫폼 및 기타 계정
31/12/2026

은행 분야 계정
30/6/2027

정부령 제**320/2026/ND-CP**호 제**20**조 제**3**항 원문

본 정부령은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 디지털 플랫폼은 기관·조직·개인과 다른 기관·조직·개인 간의 인증, 로그인 및 거래 수행에 전자신원확인 계정의 사용을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통합하여야 한다.

본 정부령 제40조 제9항에 규정된 전자거래계정(은행 분야 제외) 중 본 정부령 시행일 전에 생성된 계정은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자신원확인 계정과 연동·인증되어야 한다.

본 정부령 제40조 제9항에 규정된 전자거래계정 중 은행 분야에 속하고 본 정부령 시행일 전에 생성된 계정은 늦어도 **2027년 6월 30일** 이전까지 전자신원확인 계정과 연동·인증되어야 한다.

문의하기

DEDICA의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가 항상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문 및 심층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지금 연락해 주십시오.

기업 및 투자
형사

상시 법률자문
인수합병 (M&A)

분쟁 해결
상표 및 저작권



주소

171, A&T 빌딩

호치민시쑤언호아동 하이바쯔로



전화
+8439969 0012



11
이메일

david@dedica-law.com



웹사이트
www.dedica-law.com



지금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